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7

2026. 3. 26.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13.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14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2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피해 방지 체계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민관 협력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금융회사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 2011년 정부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사회적 범죄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 법률 명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

○ 사건 발생 및 피해 규모

- 2026년 초 경찰청에서 집계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 발생건수 확인 결과 매년 전국 발생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한 서울 지역의 발생건수가 월등히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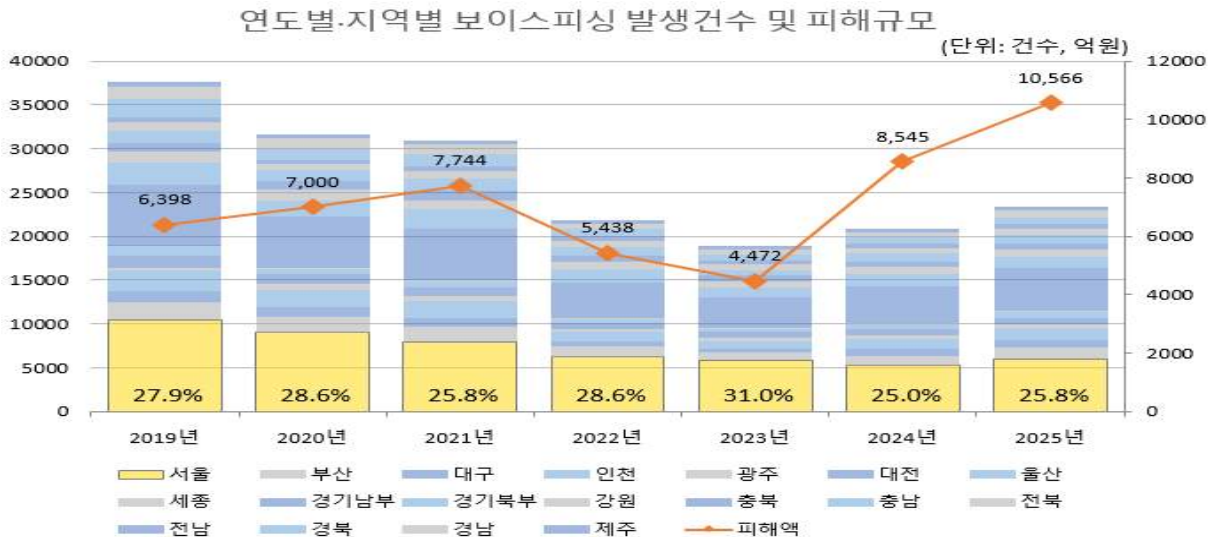

- 2019년부터 5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4년부터 다시 늘었고, 특히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하반기 신고된 고액 보이스피싱(피해액 2억원 이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 발생한 고액 피해 발생건수가 20.7%였음.

○ 정부 대응방안

- 정부는 2025년 9월 각 정부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추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함.[1] 2025년 12월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는 9월까지 증가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10월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 추세를 보임.
- 2026년 2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 빠른 대응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보제공기관과 정보분석기관 간 신속한 정보처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임.

나. 검토 내용

○ 제정 목적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강남구민의 안전한 경제생활 영위임을 확인한 것이고 타당하다고 보임.

○ 용어 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

1)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참여.

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함.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2] 2.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고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달리 구민의 권리를 강조하여 인정한 점이 돋보임.

○ 지원 사업의 실시

-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안내 및 홍보, 교육,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이에 관한 강남구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

사업 구분	소관부서	사업 대상	민·관 협력
•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특화강연)			
– 내용: 안내 및 홍보 – 주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 장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복지정책과 (2024)	강남구 거주 1인가구	• LG U+ • 서울지방경찰청
• 경로당 순회 교육			
– 내용: 안내 및 홍보 – 주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포함) – 장소: 동별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2025)	강남구 거주 60대 이상 어르신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ESG협약 체결)
– 내용: 안내 및 홍보 – 주제: 어르신 금융역량 강화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포함) – 장소: 노인복지관, 시니어센터	(2026)		• 신한은행 강남영동본부 •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
•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 내용: ? – 주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 장소: ?	지역경제과	?	• ?

- 2024년 강남구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특화강연을 제공하였음.

- 2025년 강남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60세 이상 피해자 수가 연간 5천여 건을 넘어서는 점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과의 협약을 통해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ESG연계활동으로 시행함.

- 이 조문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 대상(수혜자), 민-관 협력 예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사업비 보조**

- **안 제7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청장이 민간이전(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임.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함.

- 앞서 안 제6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사업 실시에 따라 ①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가 어디인지, ②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 범위는 무엇인지(인건비, 여비, 홍보비, 행사비 등) ③보조금 교부 조건 및 자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사업의 경우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보고 예산 편성목을 [307-11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설정하였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성격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인데, 기관 명칭은 변형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수서 경찰서, 금융감독원, 강남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 ――――――――――― ―――――――――――.

기관 명칭 표시		
단일 기관이 아닌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수서 경찰서 (X) (정정 필요) → •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SEOUL GANGNAM POLICE STATION 서울수서경찰서 SEOUL SUSEO POLICE STATION
단일 기관인 경우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O)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SEOUL GANGNAM SEOCHO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 기관 명칭은 고유 목적에 따라 지정된 명칭을 혼동 없게 표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단일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와 단일 기관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표창**

- **안 제9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재량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결정하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2021년 서울특별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 지역 25개 중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 규모가 급증하여

2025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였고,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갈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게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임.
- 이미 구축되어 있는 중앙정부 피해 대책 활동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고 공동대응 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고, 구민이 경제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서울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강남구에서 발생한다고 보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 조례 시행 효과

- 이 조례가 제정되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활성화 될 경우 그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기대 효과 >

• 금전 갈취 방식을 알려줌	→	**구민의 재산 피해 감소**
• 고도의 심리 지배를 통한 가해자의 유인 차단	→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방지**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칭 등으로 인한 불신 제거	→	**사회시스템 신뢰 제고**
• 인지 시점에 바로 신고	→	**신속한 대응 가능**
• 복합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축소	→	**가정 파괴, 자살 등 예방**

- ①금전 갈취 방식을 알려주어 구민의 재산 피해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②가해자가 고도의 심리 지배를 통해 유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공포, 불신, 대인기피 등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③사회시스템

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④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어, ⑤가정 파괴,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피해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경제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계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파. (생 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5.1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208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시행 2015. 3. 2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239호]

※ 참고 자료

[붙임 1] 서울 지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정 현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명칭		제정일자
서 울 특 별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0.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021.11.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2022.12.0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022.03.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025.03.0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025.07.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026.01.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026.03.0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2021.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09.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2.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8.0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2026.02.26.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